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162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2월 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

2.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 변경결정(안) 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폭(m)	연장(m)	면적(m ²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철도	도시철도 (4호선 서울역 정거장)	용산구 동자동 43-53	22	206	5,100	1981.07.30. (서고 287호)	-
변경	철도	도시철도 (4호선 서울역 정거장)	용산구 동자동 14-200	22~28	286	8,978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현황반영 : 증) 3,347m² •12번 출입구 및 환기구, 엘리베이터 이설 면적 : 증) 531.0m²

-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구분	기정	변경	변경후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철도 (정거장)	용산구 동자동 17-19	길이	-	23.00m ~30.61m	23.00m ~30.61m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- 12번 출입구 및 환기구, 엘리베이터 이설 부분 (360.7m²)
			폭	-	5.32m ~9.25m	5.32m ~9.25m		
			높이 (해수면기준)	-	15.51m ~32.23m	15.51m ~32.23m		

3. 입안사유

- 도시계획시설(철도)인 도시철도 4호선 서울역 정거장에 대하여 당초 누락 및 변경된 철도시설물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,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내로 12번 출입구 등 철도시설을 이설하여 주변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코자 함

4. 도시관리계획 사항

- 용도지역 : 일반상업지역
- 용도지구 : 중심지미관지구, 방화지구
- 도시계획시설 : 철도, 도로(광로3류, 지하도로)

5. 주민 의견청취

- 열람기간 : 2016. 4. 12. ~ 26.
- 공고게재 : 일간신문(서울신문, 한겨레신문), 용산구청 홈페이지
- 의견청취결과 : 의견 없음

6. 용산구의회 의견청취

- 의견청취일 : 2016. 7. 13.
- 의견청취결과 : 원안 채택

7.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
- 개최일 : 2016. 10. 25.
- 자문결과 : 원안 동의

8. 관련부서 검토의견

관련부서	검토의견	조치계획	비고
시설계획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조서 양식에 맞춰 재작성 바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양식에 따라 재작성 하였음 	반영
도시 활성화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기구 및 엘리베이터는 가로경관을 위해 별도의 세부 디자인 계획을 협의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별도 세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	반영
물순환 정책과	<빗물관리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 반영 •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전협의 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반영하여 협의하겠음 • 실시계획 수립시 빗물관리시설 계획을 협의하겠음 	반영 반영
	<지하수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(활용)계획의 반영 필요 •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제출 •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준치방안에 대해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시계획 인가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•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협의하여 공사시 적용하고 매월 제출하겠음 • 준공 전 준치방안에 대해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	반영 반영 반영
물순환 정책과	<토양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 처리 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법 처리하겠음 	반영

보도환경 개선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시계획인가 시 보도포장 설계도면 재협의 • 보도상 보행지장물이나 미관훼손 시설물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하여 유희공간에 우선 배치하고, 보도 2.0m 이상을 확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도포장 설계도면에 대해 재협의하겠음 • 보도상 보행지장물을 최소화하고, 보도 2.0m 이상 확보하도록 설계하여 협의하겠음 	반영 반영
용산구 치수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수분야에 대해 추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별도 협의 바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부추진계획과 관련 별도 협의하겠음 	반영
서울메트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자동 제2구역 사업부지와 연결하는 최소한의 설치면적만 도시계획시설(철도) 지정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소한의 설치면적만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하겠음 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기구와 교차되는 부분의 지하도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(지하도로)로 유지하고 도시계획시설(철도) 중복결정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기구과 교차되는 부분의 지하도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(지하도로)로 유지하고 도시계획 시설(철도)와 중복결정 하겠음 	반영

9. 환경성 검토

- 동자동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출입구 및 환기구, 엘리베이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면적, 녹지훼손, 지형, 비오톱, 경관 등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.

10. 기 타

○ 재원조달계획

- 개략 공사비 : 45억원 (사업시행자 자체자금)

○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

- 1978. 07. 30. :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)
- 2006. 01. 05. :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 지정(서울시고시 제2005-437호)
- 2011. 09. 22. :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 지정(서울시고시 제2011-279호)
- 2016. 03. 15. : 도시철도(4호선) 도시계획시설(철도, 도로) 변경결정 입안제안
- 2016. 04. 12. ~ 04. 26. : 열람공고(서울신문, 한겨레신문)
- 2016. 04. 14. ~ 05. 11. : 관련부서(기관) 협의
- 2016. 07. 13. : 용산구의회 의견청취(의견없음)
- 2016. 10. 25. :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(의견없음)

붙 임 : 관련도면 각 1부.

□ 위치도



□ 현황사진



□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 결정(안)도

